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제8차 총회 회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9. 11.

가고 싶은 농촌, 미래농업을 실현하는 농식품 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 제 통 상 실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제8차 총회 회의 참석 및 회의 대응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농부권 보호,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

* 자원 제공자, 이용자 양자간 이익공유가 아닌 국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
* '04.6 발효이후 146개국 가입(우리나라 가입:'09.4.)

○ 이익공유 의무화추진, 정기이용권 제도 도입, 이익공유 대상 작물 확대, 디지털서열정보 관련 이슈 사항을 검토 및 논의

2. 출장일정 및 대상지

o '19. 11. 10.(일) ~ 11. 19.(화), 8박 10일(이탈리아 로마)

* 이동(출국) : '19. 11. 10.(일)
* 제8차 정기총회 회의 : '19. 11. 11.(월) ~ 11. 16.(토)
* 전문정리 및 토의 : '19. 11. 17.(일)
* 이동(귀국) : '19. 11. 18.(월) ~ 11. 19.(화)

3. 참석자(1명)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급	출장기간	출장지
한 글	영 문				
이강오	Lee, Kang Oh	남	국제통상협력처 국제통상실/3급	2019. 11. 10. ~ 11. 19.	이탈리아 (로마)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김민욱과장, 박치형사무관),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이호선연구관, 유은애연구사), 국제기술협력과(전영아연구사) 동행

4. 출장세부일정 및 소요비용

❑ ITPGRFA 제8차 총회 회의 참석 및 대응

일자	구분	시간 (현지시각)	세 부 내 용
1일차 (11/10)	출국	15:10~19:35	인천 → 이탈리아 로마(KE931)
2일차 (11/1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TPGRFA) 제8차 정기총회 (회의장소 : 이탈리아 로마 FAO본부)	(Aisa지역회의) 09:00-10:00 (본회의) 10:00~18:00 (이슈회의) 18:00~21:00	- 조약 총회 본회의 개최, 조약 의장 및 사무국장 보고 - 작물유전자원 다자간 이익공유 체계 개정 초안 및 조약 재정전략 검토
3일차 (11/12)			- 작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농부권, 국제정보시스템, 조약 이행준수 검토 - 다년간 사업 계획 및 운영기구 하부조직 구성 검토
4일차 (11/13)			- FAO 유전자원위원회,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조직과 협력방안 논의 - 작물유전자원 다자간 이익공유 체계 개정안 협상
5일차 (11/14)			- 작물유전자원 다자간 이익공유 체계 개정 협상안 검토 - 조약 재정전략, 농부권 의제 논의, 조약 사무국장선임
6일차 (11/15)			- 조약 결정문 초안 및 이익공유 체계 개정 협상안 검토 - 차기 총회 의장단 선임 및 일정·장소 결정 - 조약예산 계획 채택
7일차 (11/16)			- 조약 총회 결정문, 이익공유 체계 개선안 최종 심의, 채택 및 폐회
8일차 (11/17)	총회 결과정리	09:30~18:00	- 분야별 이슈사항 결과 정리 및 의견 교환
9~10일차 (11/18~19)	귀국	22:00~17:00	이탈리아 로마 → 인천(+1일)(KE932)

❑ 소요예산 (1명) : 금4,179,110원(금사백일십칠만구천일백일십원)

(환율 : 1$ = 1,207.14, 2019. 10. 17. 평균환율, 현찰 살 때 기준)

구분		급지	직급	금액($, 원)	인원	일수	계/$	금액(원)
국외여비	항공료 (공항세, 유료할증료 포함)	나급	3급	1,760,800원	1	-	-	1,760,800
	보험비			20,900원	1	-	-	20,900
	일비			$35	1	10	350	422,499
	숙박비			$120	1	8	960	1,158,854
	식비			$78	1	8.667*	676	816,058
합 계								**4,179,111**
합 계(일원단위절삭)								**4,179,110**

○ 집행과목 : 생명자원DB구축/여비/국외여비(4,000,000원)

농식품해외정보수집및분석/여비/국외여비(179,110원)

- 전도금(일비, 식비, 숙박비)은 계좌입금, 실비(항공운임, 보험비)부문은 법인카드 결제

* 항공편 기내식(총 4식) 제외, 원화 일원 단위 절삭

Ⅱ 출장 결과

1.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식물유전자원조약 제8차 총회 결과

❑ **목적**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체계 개정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개최일자 및 장소** : 2019. 11. 11.(월) ~ 11. 16(토), 이탈리아 FAO 본부

❑ **참석자** : 120여개국 대표단 600여명 및 관련 국제기구 등 옵저버 16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주이탈리아 대사관(권희석 대사(수석대표), 강효주 농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김민욱 과장, 박치형 사무관), 농촌진흥청(이호선 연구관, 유은애 연구사, 전영아 연구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강오 실장)

❑ **핵심요지 및 평가**

○ (조약개정 협상) 디지털서열정보(DSI), 유전자원 확대 등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도출 실패, 다음 총회('21)까지 조약개정 논의·협상 중단.

- (주요쟁점) 많은 국가들이 DSI를 가장 민감(Red-line)한 이슈로 인식

* DSI:아프리카는 조약을 통해 접근한 자원의 유전정보가 식량·농업 목적 외에 사용되 않도록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 북미·유럽 등은 그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수용거부, DSI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 노출

* 유전자원 확대: 에콰도르에서 유전자원을 확대해도 기금이 확충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자국 자원주권 보호를 위해 자원 확대 거부,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이익공유 기금이 일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원확대를 취소하는 조항 요구(선진국 거부)

* 이익공유 비율: 선진국은 0.015%, 개도국은 0.06% 요구(정기이용권 기준)

- (향후협상) 다음 제9차 총회('21)까지 조약 개정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함

* 개도국들이 협상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진국들은 추가 논의 거부

❑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 (미국, 일본) 여러 부처 기관이 참여해 법률, 기술, 외교,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

- 미국은 의장국이자 영어권 국가로써 이점을 살려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 작성을 주도하면서 자국에게 민감한 내용을 제거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

- 일본은 총회장에서의 강력한 발언은 자제하면서 타 선진국이나 아시아국가들의 우호적 여론 조성 노력(단, DSI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 표명)

○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DSI 이슈에 집중하여 강경한 발언을 내며 협상의 흐름을 주도(DSI 이슈를 제외한 조약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DSO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도입, 용도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요구 제시

-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이 회원국 여론 형성 및 자문 등을 주도함

○ (그 외 개도국) 대체로 아프리카와 입장이 유사하나 협상 타결을 위한 절충안 마련에 훨씬 유연하고 협조적 태도를 보임(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레바논이 각각 아시아, 중남미, 근동 지역 개도국의 여론을 주도)

-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아르헨티나는 의장국 미국의 리더쉽에 대한 불만 표명

○ (필란드, 캐나다) 각각 유럽, 북미를 대표해 아프리카와 대립 구도 형성

○ (에콰도르) 작물 확대에 수용 불가 입장을 내며 협상 전반에 비협조적 입장

❑ 그 외 사항

○ (협력) 농촌진흥청은 FAO 국제농업연구자문기구(CGIAR) 및 세계작물다양성재단과 만나 종자은행 관리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등 협력과제 추진에 합의

○ (예산) 일본·유럽 등이 조약 예산 증액 안이 과다(13%)하고 예산 보고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 향후 2년간은 조약 예산을 동결하기로 결정

○ (차기총회)'21년 인도에서 개최, 의장국은 모로코, 현 사무국장 유임

○ (DSI) 조약은 다년간 과업 및 과학자문위원회의 검토 과제로 DSI 포함

2. 상세 내용

□ 본회의 (11.11. ~ 11.16.)

○ **(개회식)** '19년 11월 11일 오전 10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제8차 총회의 의장인 크리스틴 도슨(미국)은 갈등·기아·억압으로 여전히 고통 받는 이들과 휴전 기념일을 위한 묵념으로 개회를 시작함. 기조 연설자인 로버트 왓슨을 비롯한 11명의 인사들이 생물다양성 및 식량안보에 대해 강조함

- 마리아 헬리나 세메도(FAO 부국장) 최근 조지아와 몽골의 비준을 환영하며 생물다양성은 후대를 위한 유산으로서 유전적다양성 확장·농업정책 강화·국제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및 조약 연구 필요성을 강조
- 나렌드라 사이 토머(농림부 장관, 인도) 유전자 서열을 고려한 운영체계와 실용적인 식물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요구
- 테레사 벨라노바(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소작농, 여성 등 다각화에 중점을 둔 이익 공유 강조
- 마리 하가(작물다양성재단 총재) 자급자족, 식량안보에 자유로운 국가는 없으며 조약의 중요성이 더 커져야 함을 강조
- 미셸 켈러(국제종자연맹) 재정적 기여를 통한 이익공유기금(BSF)과의 협력, 육종 및 조약에 대한 산업의 기여 강조

- 에벌린 애드히암보 오코스(농민대표)는 현지 농민의 권리,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 등을 목적으로 한 케냐 서부 BSF 지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고
- 로버트 왓슨(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과학정책 플랫폼(IPBES) 전 의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전 의장) 백만 종의 생물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농업 생태에 따라 시스템의 부문·통합적인 수준에서 빠른 변화와 복원력 강조
- 아이레네 호프만(FAO 유전자원위원회 국장) 생물다양성과 식품시스템의 관계를 강조. 식량 생산과 식량 재배 방식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켄트 나도지에(ITPGRFA 장관) 조약은 기아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범지구적 문제를 다루는데 기여해야하며 당사국들의 상호 이익이 되는 타협을 강조
- 레니 캐스트로-살라자르(FAO 사무총장)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유전정보(DSI)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 강조

○ **의제 1. 의제와 회의일정 채택**

- (사무국 보고) 의제와 주요 회의일정(구조·정책·이행·예산·행정적 문제)을 채택함. 또한 차기 2년 동안의 예산과 작업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함
- (주요 국가 발언) 북미, 유럽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약 대상 작물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는 조약 대상 작물 확대는 정기권 이용 제도 및 그에 따른 지불비용의 비율과 DSI 문제 등 이익분배 운영에 달려있다고 함. 아시아는 모든 국가의 대표단들이 조약 대상 작물 확대, 기금 운영과 같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의제 2. 조약 간사(Rapporteur) 선출(11.11)**

- G77(개도국 연합)의 추천으로 쿠웨이트를 간사로 선출

○ **의제 3. 신임장 확인 위원회(Credential Committee) 구성(11.11)**

- 우간다,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이탈리아, 수단, 남아공, 미국으로 구성

○ **의제 4. 예산위원회 구성(11.11)**

- 지역별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로 구성(짐바브웨, 카메룬, 인도, 일본, 스위스, 르완다, 코스타리카, 쿠바, 이란, 캐나다, 미국, 호주, 파푸아뉴기니아)

○ **의제 5~6. 조약 운영기구 의장 및 사무국장의 보고**

- (사무국 보고) 의장은 의장의 활동, 제7차 총회 이후 조약 관련 진전사항에 대하여 보고. 사무국장은 개도국의 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 감소를 지적하면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독려하였고, 역량강화 전략 체계 초안(draft framework)에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강조

- (주요국가 발언) 아시아는 농부권과 조화를 이루는 이익공유 개선을 강조. 북미는 개도국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을 강조. 북미는 또한 이익공유에 대한 의제 상정안이 8차 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하고, 역량강화 노력은 국가별 초점에서 벗어나야 하며,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첨언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는 AFACI(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등을 통하여 개도국 유전자원 관리 담당자들의 능력 배양을 지원(초청 연수 등), 앞으로도 교육 및 기술교류 등의 국제 협력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의제 7. 조약 15주년 기념**

- (사무국 보고) 사무국장은 조약 발효 이후 주요 성과와 결정문 초안의 요소들을 강조

- (주요국가 발언) 캐나다는 조약이 유전자원의 보존, 이용 및 유전적 다양성 제고를 촉진하여 한다고 강조. 유럽은 다자적인 접근과 농업생물다양성 관리 측면에서 조약의 기능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파트너쉽을 강조. 아시아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와 함께 건전한 기술에 기반한 토론을 강조. 아프리카는 역량강화 노력 등 이익공유기금 기반 지역 프로젝트를 강조. 브라질은 정보기술의 획득과 사용에 대한 능력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익공유 이행을 강조. 또한 아르헨티나와 함께 결정문 초안에 조약 18조(재정자원)에 대한 reference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의제 8.1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이행과 운영(11,11)**

- (사무국 보고) 사무국은 2018.8월부터 2019. 7월까지 국가별 다자체제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개

- (주요국가 발언) 다자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일본, 유럽은 다자체제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양식의 현행화 및 자원 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북아메리카는 다자체제를 적용하지 않은 국가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중남미는 차기회의까지 검토가 끝나야함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는 다자체제 이용 확대와 DSI가 이익공유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는 다자체제 이행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조약을 반영한 국내 이행 기반 구축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가 긴요하고 이에 따른 사무국과의 협력이 필요

○ **의제 8.2.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기능향상 및 조약개정(11.11)**

- (사무국 보고) 사무국은 다자체제에 의한 이익공유 의무, 조약 적용작물이 기존의 Annex 1의 64종에서 전작물로 확대하는 것과 유전정보를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조약 개정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에서 개정안 초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로 난감한 상황임을 알림

- (작업반 보고) 작업반은 적용작물 확대와 관련하여 DSI의 이익공유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이견차이가 커서 결정하기가 어려움을 표명하고 협의가 더 필요하며,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잠정 중지할 것을 건의함.

- (주요 국가 발언) 호주, 미국, 스위스,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중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은 소그룹회의를 통해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짐바브웨는 이번회의에 결정문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일본은 DSI 적용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자체제에 대한 현재의 기능 및 한계 등에 먼저 조사·분석하는 것에 대해 지지함을 표명

- (주요 결정사항) 의장단은 일단 본회의에서는 논의를 연기하고 지역회의나 비공식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 방향을 협의할 것을 요청함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는 조약 개정에 대한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 총회에서 개정을 진행하기 보다 차기 회의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 동의

○ **의제 8.2.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기능향상 및 조약개정(11.12)**

- (사무국 보고) 사무국은 이번 회의의 핵심쟁점인 적용작물 확대와 DSI의 이익공유 포함에 대해 국가별 의견 요청

- (주요 국가 발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Near East, 필리핀, 우루과이, 인도,

IPC(International Planing Committee for food sovereignty, 식량주권을 위한 국제계획위원회), 잠비아, 이집트, 에쿠아도르, 쿠바, 과테말라, 브라질)은 DSI가 조약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특히 잠비아는 다자체제 기능에 DSI가 제외(ignoring) 되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발언. 에쿠아도르, 우루과이, 쿠바, 과테말라는 현재 종자업계에서 식량농업식물이 다자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작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아시아지역그룹은 조약개정이 과학기술개발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을 표명함. 그러나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별 자원접근과 정기이용권 도입, 종자매출을 고려한 이익공유액(0.1%) 산출 등을 포함된 조약개정에 찬성하고, 조약의 SMTA는 유전자원의 이용은 물질(material)이지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DSI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임을 강력히 주장. 특히 호주는 DSI가 포함되는것에 대해서는 식물조약의 기본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다는 것과, 핀란드는 DSI와 관련한 역량강화, 기술이전 등이 벌써부터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함. 그러나 아프리카는 DSI는 식물조약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함. 칠레, 아르젠티나는 유전자원의 정의에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 말레이시아는 국가별 관련 정책과 규정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안함. PIC는 농부가 소유한 유전자원의 DSI에 대해 재산권(특허권)을 주장하여 이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유화할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고 발언하고, 운영기구(Governing Body)가 효과적인 이익공유 이행 관리 수단이 없음을 인지해야함을 강조함. 아프리카협의체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이 DSI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Civil Society는 DSI를 포함하지 않는 조약은 불공정한 것임을 표명함. 국제종자연맹(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ISF)은 조약적용작물 확대, 정기이용권 도입, 합리적인 이익공유 비율을 지지함. 코스타리카와 아르젠티나는 조약개정을 위한 작업반의 운영을 연장할 것을 지지함. 르완다는 정기이용권도입과 DSI가 이번 회의에 가장 핵심 쟁점으로 이번회의에 결정이 나야할 것임을 강조함. 그러나 의장은 국가간 이견이 많기 때문에 비공식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고 회의 종료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DSI 쟁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여 총회 회의장에서 결정을 못낼 것을 예상하여 사무국은 소그룹회의를 통해 절충안을 합의할 것을 요구함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표로 소그룹회의에 참석하거나, 선진국의 리딩 국가인 스위스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DSI가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개진 될 수 있도록 함

○ 의제 8.2.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기능향상 및 조약개정(11.13)

- (사무국보고) 당사국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컨택그룹을 구성하지 못하니, 대륙별 대표 2개국의 대표단이 모여 비공식회의를 통해 절충 합의안을 만들 것을 요청

- (주요 국가 발언) 국가별로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임. 호주, 아르젠티나는 소그룹회의를 지지하였으나 아프리카, Near East, 에쿠아도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쿠바, 르완다, 잠비아 등 개도국은 대륙별 발언 기회를 더 주고, 투명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그룹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표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해 아프리카는 발언할 수 있는 국가를 대륙별 4개국으로 제안하였으나, 의장은 대륙별 발언 2개국과 옵저버 2개국으로 총 4명씩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비공식회의를 소집할 것을 최종 요청함.

○ (소그룹회의) 의제 8.2 및 8.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기능향상 및 조약개정(11.14)

-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 인도가 발언국가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옵저버로 참석

- 미국과 브라질이 상정할 결정문 절충안을 작성하여 논의

  · (주요내용) 회의에 상정하였던 결정문 초안 중 29-34항에 유전자원 접근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related information”와 “other associated available non-confidential descriptive information”안에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SMTA 6.7과 6.8의 각주에 “related information”에 “which could include genetic sequence data”를 추가함

- (주요 국가 반응)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번 절충안에 포함된 “유전정보”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분석으로 수용하는 입장이고, 인도와 중남미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SMTA의 각주로 들어가있는 내용을 본문에 넣을 것을 요청함. 그러나 짐바브웨는 SMTA에 유전정보를 이용한 이익공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식량농업을 위한 이용으로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여 캐나다, 스위스, 아르헨티나가 절충안에 충분히 반영되어있음을 설명

○ 의제 8.2 및 8.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기능향상 및 조약개정(11.15)

- (국가별 발언) IPC, CIVIL SOCIETY는 SMTA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지하고 대신에 DSI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식물조약이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결정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국제종자협회(ISF)도

SMTA가 유전자원을 다자체제하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이에 대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 해야함을 주장함.

- (의장 요청) 소그룹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이익공유액과 DSI정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

○ 의제 8.2.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기능향상 및 조약개정(11.16)

- (의장보고) 본 회의 및 몇 차례의 소그룹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이번 쟁점의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별 의견 요청

- (국가별 발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레바논, 케냐 등 개도국은 이번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차기회의까지 시간을 갖고 좀 더 작업할 것을 요구, 인도와 필리핀은 DSI에 대한 연구 및 법률적 분야까지 심도 있게 추진하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서 희망함. 캐나다는 DSI와 같은 핵심이슈는 DSI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여기 조약에서는 다루지 말고 휴지기를 갖는 것을 제안. 핀란드, 호주 등 선진국들도 논의가 더 진행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약에서 다루지 않길 제안. DSI에 대해서도 2020~2021까지 기술전문가에 의해 좀 더 연구하고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고, 조약 다년간 계획에 9차 및 10차 까지 DSI에 대해 연구할 것을 포함하자고 절충안을 의장이 제안하였으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반대함.

- (최종 결정) 다자체제 개정에 대한 협상 지속 및 차기 총회를 위한 작업반 구성, 정책 연구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2년간 다자체제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게 됨

○ 의제 9.1. 조약 기금 확충 전략 현황 (11.11.)

- (사무국 보고) 결정문 초안을 포함한 조약기금 확충 전략을 보고

- (주요국가 발언) 에콰도르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재정적 기여에 대해 보고할 것을 제안, 아르헨티나와 레바논은 일부 선진국들의 재정적 기여 의무 불이행을 언급하면서 조약의 개별조항을 상기시킴, 북미는 자원조달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지원을 촉구. 유럽은 2018년 6월이 SMTA 하에서 만들어진 조약기금 확충 전략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여에 주목. 브라질은 조약기금 확충전략에 대한 긴급한 기여를 요청. 일본은 매출규모에 근거한 지급률 계산에 대하여 충고. 국제종자연맹(ISF)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제안. 국제식량주권계획위원회(IPC)는 영세농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투명한 조약기금 확충전략을 요청

○ 의제 9.2. 조약 기금 확충 전략 개선 방안 (11.11.)

- (사무국 보고) 조약기금 확충전략 및 자원조달에 대한 특별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인 올윈 코프세(스위스)는 조약기금 확충전략을 보고하면서, 결정문에 조약기금 확충전략의 목표 비율, 새로운 2020~2025년 전략, 매뉴얼 운영, 상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들어갈 것을 제안

- (주요국가 발언) 많은 국가들이 결정문 초안을 지지. 유럽은 프로그램에 입각한 접근을 환영. 에콰도르 등은 새로운 기여자와의 협력을 환영. 일부 국가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기 전 다자체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 아시아, 캐나다, 유럽이 현실적인 전략 목표를 지지한 반면, 콩고는 높은 목표를 요구. 우루과이는 합리적인 연간 목표로서 25백만 달러를 지목. 캐나다, 일본은 이 목표가 지나치다고 지적한 반면, 유럽은 2026년까지 전략의 40% 달성과 함께 향후 10년간 목표로 9~11억 달러를 지지. 캐나다는 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기반 방법론의 수정을 제안. 유럽, 콩고, 우루과이, 캐나다는 상임위원회 설립을 지지한 반면, 아시아는 현 특별위원회 유지를 선호.

- (주요 결정사항) 이익공유 체제 개정이 불발됨에 따라 기금전략 목표를 설정할 수 없음에 다수 국가가 동의, 기금 목표를 제외한 채 기금전략 채택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기존에 제안되었던 기금 목표(10년간 9~11억 달러)가 지나치게 높고 목표 설정의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데 동의, 향후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캐나다, 일본 등 타 선진국과 공조 추진

○ 의제 10. 국제정보시스템 (11.12.)

- (사무국 보고)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29개국에서 디지털객체식별자(DOIs) 사용을 시작하였고 834,252개*의 식물유전자원정보가 디지털객체식별자 등록을 통해 국제정보시스템(GLIS)포털에 연결되었다고 보고함. Axel Diederichsen (과학자문위원회 공동의장, 캐나다)는 식물유전자원 표현형 자료, 내력자료, 유전체서열자료를 디지털객체식별자에 적용하는 것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Genesys, GRIN-Grobal 등과의 협력 사업을 보고함. 또한 디지털객체식별자는 유전자 서열 데이터를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출발점임을 시사함.

  * GLIS시스템에 등록된 DOI는 총 834,252건(2019. 6.1., 밀 22%, 벼 18% 등)을 구축 하였으며 772,196건이 이용자에게 제공됨(PGRFA의 92%)

- (주요국가 발언) 인도는 국제정보시스템 관련 기관들과 협력 강화를 요청함. 유럽은 디지털객체식별자의 사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에콰도르는 유전자서열데이터의 이익 공유를 요구함. 우루과이와 브라질은 디지털객체식별자가 향후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정보를 추적 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강조함. 캐나다는 디지털객체식별자의 적용에 관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아프리카 및 농민단체는 DSI 사용자는 국제정보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전에 SMTA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쟁점사항)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정보체계는 기존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자원의 보존·관리·활용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시스템 간 상호연결을 통해 정보접근의 유용성을 보장함. 또한 디지털객체식별자 등록과 이용 장려를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론 유전체정보까지 포함한 디지털객체식별자를 이용한 접근과 이익분배에 관해 향후 고려할 사항이 많음.

- (주요 결정사항) 다년간 계획으로서 2018-2019에 이어 차기 2020-2021에도 국제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디지털객체식별자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 특히 개발도상국과 유전자원은행에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 개발 강화를 위환 활동들을 지원함. 각국 유전자원은행에 디지털객체식별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 현재 진행 중인 Genesys, WIEWS, GRIN-Global, EURISCO, Web-SDIS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현재 기존 정보시스템들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장려하도록 함.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기존 자원관리시스템과 국제정보시스템(GLIS)과의 연계 혹은 디지털객체식별자(DOIs)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노력과 비용 대비 자원정보 관리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원 보유 기관들의 시스템 연계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우리나라는 세계작물다양성재단(Global Crop Diversity Trust)의 가입국으로서 향후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국 간에 자유로운 유전자원 교류를 위해 시스템 연계의 긍정적인 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반대로 우리 유전자원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사무국은 식물유전자원유럽협력계획(ECPGR) 운영위원회의를 포함한 여러 회의에서 DOIs에 대한 설명과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며 DOIs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GLIS 포탈 개발의 현 상태, 유전자은행 간의 파트너십 강화 등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최신 정보 수집이 필요함.

○ 의제 1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11.12.)

- (사무국 보고) PGRFA의 지속가능한 툴박스개발 필요성 제기되었으며 웹페이지 개발과 데이터베이스구축이 필요함. 체약국과 기타 이해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플랫폼은 2011년 시작, 제6조 이행을 위해서 협업과 공동생산 및 기술이전시 협업을 늘려서 플랫폼의 역할 발전, PGRFA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농민의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국제조약이행 개선, 기아종식,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달성에 기여, 특히, 국제조약 제5조, 6조, 9조를 이행할 때 중요한 상승효과 및 PGRFA연계로 다른 프로세스나 파트너의 계약 지원

- (주요국가 발언) 일본은 전문가 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할 것을 제안

- (주요 결정사항) 특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지역별 3명)하여 2차례 이상 대면회의를 통해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술적 방안, 국제협력, 툴박스 개발 등을 계속 검토하도록 결정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유전자원 보전 우수사례와 툴박스 등을 검토하여 국내 유전자원 보전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

○ 의제 12. 농업인 권리(농가의 자가채종 및 유통 권리 등) (11.12.)

- (사무국 보고) 제7회 이사회에서 제9조 농업인의 권리이행에 관한 결의(2017.7) 채택 후 농업인의 권리에 관한 임시 기술전문가 집단을 설립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은 농업인의 권리 이행 촉진을 위한 국가별 정책수단, 우수사례 및 교훈 등을 분석하여 보고.

- (주요국가 발언) JORDAN은 현지 품종을 사용하는 소규모 보유자가 직면 한 어려움과 아프리카는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공여국의 지원 부족과 국가 정책 개발에 대한 농민의 참여 부족을 지적, 아시아, 에콰도르, 노르웨이, 칠레, 칠레 디부 아르, 카메룬, 과테말라, 짐바브웨 및 스위스는 AHTEG의 지속적으로 지원. 북아메리카, EU, 호주 및 일본은 AHTEG가 원래의 기준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코트디부아르와 CIVIL SOCIETY는 농민, 농민 및 원주민을 효과적으로 대표 할 것을 요구. ECUADOR, ZIMBABWE, IPC 등은 농민의 권리 이행에 관한 AHTEG 초안 자발적 지침 개발을 제안. 스위스는 사무국에 UPOV 협약과 조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속적성을 요청하고, EU는 농민의 권리, 조약, UPOV 협약 및 세계지적 재산권 조직 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 권장. EU는 생계에서 상업용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민은 양질의 씨앗에 접근하여 농부권의 권리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 강조.

- (주요 결정사항) 농부권의 그룹은 당사자 및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특히, 농민단체를 인벤토리에 초대하여 견해, 경험, 모범사례를 공유. 농부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역 워크숍과 기타 컨설팅 개최, 농민의 권리 실현을 권장 및 지도, 촉진하기 위한 옵션개발을 AHTEG에 유지 및 연장, "mutatis mutandi(적절히 준용하여)"라는 용어유지. 각 지역당 최대 5명의 구성원중에 2명의 농부대표 포함하여 농부조직의 의견반영.

<농부권에대한 쟁점협의그룹(11.14)>

- 오전 본회의 후, 농부권과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관한 쟁점협의그룹 회의, 기금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GLIS와 조약기금 확충전략에 대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음. 또한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 저녁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 **(본회의)**크리스틴 도슨 의장은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 강화에 대한 수요일 비공개 그룹회의 결과가 긍정적이었음을 알리고 당일 일정을 약술.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에 대한 비공개 그룹회의 공동의장인 캐트린 요을 페이지(미국)는 건설적인 미팅에 대한 감사를 그룹 멤버들에게 표시하고 공동의장들의 텍스트가 당일 만들어질 것임을 언급. 조약기금 확충전략에 대한 비공식 그룹의 공동의장인 올윈 코프세(스위스)는 이익공유기금 목표가 제외된 결정문 초안이 금요일에 회람될 것이며, 이는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에 대한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

- **(쟁점협의그룹 회의)** 결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 재개. 농부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역 워크숍과 기타 컨설팅 개최를 위하여 당사국과 관련 조직을 초청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이해당사자 그룹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장시간의 회의 개최. 스위스와 프랑스는 시민사회단체와 민간부문을 포함할 것을 제안. 네덜란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 나이지리아는 소작농을 포함할 것을 요구. 프랑스는 민간과 공공단체를 포함하기 위한 종자 분야(seed sector)에 대한 자료를 요청. 노르웨이, 에콰도르, 과테말라는 제7차 총회에서 의결된 original formulation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10년 이상 협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 잠비아와 말라위는 농민단체 외 이해당사자의 특정그룹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에콰도르와 잠비아 등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며 농부권 실현에 대한 지식과 경험 교환에 있어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

웨이와 미국, 프랑스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를 고려하는데 동의. 프랑스는 종자 분야에 특정 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청.

- 대표들은 견해, 경험, 우수사례 업데이트와 제안을 위하여 당사국과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 특히 농부단체를 초청하는 데 동의. 대표들은 사무국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요청이 협상 중인 역량강화전략 프레임워크 초안에 연계되어야 하는 것인지 논쟁.

○ 의제 13. 조약 이행 준수(조약에 따른 이익공유 등) (11.12.)

- (사무국 보고) 53개국의 조약이행현황에 대한 현황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이행준수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회의 상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당사국들에게 조속한 제출 요청

- (주요 국가 발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행준수위원회에 기금전략위원회와 협력하여 보고서 양식의 업데이트와 기금전략 이행, 모니터링을 요구

- (주요 결정사항) 각 지역별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 이행준수위원회를 선정, 회원국들에게 이행준수 계획의 수립, 역량배양 워크숍 등의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국가별 이행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 사무국에는 재정 여건에 따라 권역별 역량배양 워크숍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조약이 반영된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및 당사국으로서 이행현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부처 업무분담 등 작업 추진

○ 의제 14. 조약에 대한 FAO의 기여 (11.13.)

- (사무국 보고) FAO는 15년 동안 사무국을 운영하고 재무, 행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조약의 이행에 기여함. FAO는 조약의 기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2018-2019년 예산에 2백만 달러를 지불함. FAO는 회원국의 조약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식량 안보에 관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국가 발언) 많은 국가들이 FAO의 공헌에 대해 감사를 표함. 아프리카는 생물다양성이 농업부문에 통합될 수 있도록 FAO의 리더십을 강조. 아시아는 조약의 국가간 조율 및 인식제고에 소요되는 작업량, 노력들을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의 활용강화를 제안함. 잠비아는 FAO 국제조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

구함. 우리나라는 FAO의 사무국장이 조약비가입국가인 중국 대표임을 언급하며 FAO에서 공헌하는 비가입국들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요청. 국제식량안보위원회(The International Planning Committee for Food Sovereignty, IPC)는 현재 FAO 활동에 토착민, 지역 사회 및 소작농 등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주요 결정사항) 조약에 대한 FAO의 재정적, 행정적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 지원을 요청, 특히 조약 비가입 국가의 가입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추진과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방안 추진을 요청

○ 의제 15.1. 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와의 협력 (11.13.)

- (사무국 보고)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사무국장 아이린 호프만은 의제(IT/GB-8/19/15.1)를 보고하고, 농부들이 보유한 품종·재래종의 지속적인 보존과 이용에 대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강조.

- (주요국가 발언) 당사국 대표들은 조약과 위원회의 협력을 환영하면서 업무의 중복회피를 강조. 유럽은 GLIS와 Genesys 포털 간 조화 강화를 지지. 아프리카는 GLIS, FAO의 '세계 정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World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및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체계 간 협력에 있어 디지털 서열정보(DSI)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은 조약 운영위원회(GB)와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업무의 기능적 분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나, 캐나다는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는 동물 및 미생물 유전자원, 조약은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촉구. 또한 캐나다는 생물다양성협약과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가 유전자 서열 데이터를 논의할 중심적인 회의임을 인정. 국제식량주권계획위원회는 세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현황 보고 및 농부권을 다루는 현지 내 보존 심포지엄을 제안.

- (주요 결정사항) CGRFA는 동물, 미생물, 무척추동물 유전자원에 집중하고, 조약은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에 집중할 것을 촉구. 두 기구는 종자은행 운영표준 실행, 능력배양, 종자 관련정책의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이익공유, DSI, GLIS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DSI 등에 관련하여 위원회(CGRFA)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조약과 위원회 상호간에 활용가능한 정보와 인력은 적극 공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 의제 15.2. 국제작물다양성재단(Global Diversity Trust)과의 협력 (11.13.)

- (사무국 보고) 사무국은 관련의제(IT/GB-8/19/15.2)를 설명하고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은 관련 보고서를 약술.

- (주요국가 발언) 많은 당사국들이 결정문 초안을 지지. 유럽은 조약 이사회(Trust's board)와 8차 운영기구(GB) 및 두 사무국 간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 아프리카는 미국과 함께 농부단체의 제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조약이 조약기금 확충전략의 필수요소임을 강조. 남서태평양은 지역에서의 조약의 활동을 강조. 캐나다와 미국은 조약의 임무가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센터를 지원하는 것 이상임을 설명하고, 작물의 야생근연종 및 현지 멸종위기 자원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에콰도르는 조약이 국내 또는 국제적인 기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회원국의 종자은행을 주로 지원할 것을 제안. 미국과 잠비아는 조약과 Crop Trust가 함께 계획·운영하는 협의체와 프로그램을 우선시 할 것을 제안. 말레이시아는 Genesys와 작물 야생근연종을 고려한 Crop Trust의 활동을 강조. 요르단은 능력배양 노력을 강조. 국제식량주권계획위원회(IPC)는 현지 외 보존과 현지 내 보존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 CGIAR은 품질관리와 자원 건전성 향상 기술 및 방법 개발을 강조함

- (주요 결정사항) Crop Trust는 개도국의 국가종자은행 운영 지원에 대한 기금 배분과 2년간 자금조달 과정을 9차 운영기구 회의에서 보고할 것. 또한 사무국과 함께, 조약 당사국과 이해당사자들의 자원이용 촉진 측면에서 '작물보존전략(Crop Conservation Strategy)'을 실행·업데이트 하고 그 과정을 9차 운영기구 회의에서 보고할 것.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는 올해('19.8) 농진청과 Crop Trust 간의 MOU를 갱신하였으며 향후 유전자원 보전 분야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의제 15.3.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와의 협력 (11.13.)

- (사무국 보고) 사무국은 관련의제(IT/GB-8/19/15.3) 및 문서(15.3/Inf.1,15.3/Inf.2)를 설명.

- (주요국가 발언) 생물다양성협약은 시너지를 강조하고 지구환경기금(GEF)에 지침 제공, 디지털 서열 정보I의 잠재적 실행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위한 지표 개발 등 협력활동을 약술. 또한 포스트-2020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모든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 유럽은 DSI에 대한 역량강화 등 관련 공동프로그램 마련을 제안.

-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의 목표, 특히 이익공유가 생물다양성협약에 부합할 것을 강조. 미국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과 생물다양성협약간 양해각서에 주목. 캐나다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포함한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당사국에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 현재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환영. 아프리카연합은 DSI가 언급되지 않으면 포스트-2020 프레임워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상기. 국제식량주권계획위원회(IPC)는 농부권의 실행과 함께 원주민·농부와의 공정한 이익공유를 요청.

- (주요 결정사항)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적응에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인정. GLIS와 CBD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간 정보교환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색.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BSAPs)의 수정·현행화 및 나고야의정서와 조약의 상호 지원적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을 제안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조약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 생물다양성 협약 총괄 부처 환경부 간에 유전자원 이익공유 체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필요,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DSI 이슈 대응 관련 상호협력 필요

○ 의제 15.4. 그 외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11.13.)

- (사무국 보고) 사무국은 관련의제(IT/GB-8/19/15.4/1)를 설명.

- (주요국가 발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조약과 관련된 활동을 보고. CGIAR은 조약의 CGIAR 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 DSI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Svalbard Global Seed Vault)에 대하여 보고. EU는 UPOV, CBD, 조약(Treaty) 간 상호협력을 요구. 벨기에는 루벤카톨릭대학의 초저온 동결보존 시설에 주목. 아프리카 등은 관련 기관/기구 간 협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에콰도르는 협력이 조약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은 조약 당사국들이 UPOV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은 각 국가의 법률·제도를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 아르헨티나는 농부, 육종가, 소작농의 권리 간 균형을 요구. 필리핀은 PGRFA 중복보존을 위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 말리는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Bioversity International)과의 협력을 강조. 코트디부아르는 코코넛 유전자원의 보존과 공유를 위한 중복보존을 강조하면서 자국 자원의 이전보존에 대한 지원을 요청. 코스타리카는 열대농업

연구고등교육센터(CATIE)의 유전자원 보존에 대한 지원을 요청. 쿠바는 자국의 종자은행에 기부된 보존기기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 마다가스카르는 지역공동체 종자은행 및 관련 프로토콜 개발을 강조.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UPOV와 조약 간 상호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당사국과 옵서버의 기여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 시민단체와 국제식량주권계획위원회(IPC)는 많은 당사국들이 UPOV를 비준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별 독자적인 식물품종보호 시스템에 비하여 UPOV가 조약의 목적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

- (주요 결정사항) 사무국은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의 정보지식관리협의체(InforMEA)에 참여하여 조약 당사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새로운 생물다양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UPOV,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협력을 지속. 기타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운영기구에 보고. 조약 당사국과 기부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 조약 당사국, 국제기관, 기타 관련기구에 종자유전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이용을 촉구

- (우리나라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는 스발바르 종자저장고에 벼, 보리, 수수 등 1.3만점의 토종 종자를 안전 중복보존하고 있으며 향후 1만점 가량을 추가로 보존 등 지속적인 협력 방안 검토

○ 의제 16. 국제조약 업무의 다년간 계획(DSI 이슈 포함) **(11.13.)**

- (사무국 보고) 사무국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사용, 농부권, 다자체제, 국제정보시스템, 기금 모금에 관한 다년간 계획을 보고함. 특히 디지털서열정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 사무국의 일관성 있는 진전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 중복된 노력을 피하기 위해 다년간 계획(Multi-Year Programme of Work, MYPOW)과 관련해 협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구함. 또한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사용에 관한 잠재적 시사점이 있음을 언급함.

- (주요국가 발언) 소그룹회의를 통해 일본과 호주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다년간 계획(MYPOW)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함께 진전해야하며 생물다양성협약과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는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함. 아프리카 연합은 다년간 계획에 디지털서열정보가 포함되어야하며 법적 명확성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요구함. 에콰도르는 디지털서열정보가 조약의 일부이며 사전 동의 없이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함.

- (쟁점사항) 짐바브웨 등 자원 제공국은 유전정보가 식량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북미, 일본, 호주, 유럽 등 자원 이용국은 조약의 기본 취지에 따라 유형의 유전자원만 적용대상임이며 SMTA에 DSI의 이익공유와 유전자원을 식량농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명시를 허용하지 않음. SMTA에는 구체적 이익공유 지불 퍼센트(%)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협상이 더 이상 진전 불가능하며 아프리카(짐바브웨)는 현재 SMTA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무리한 협상대신 다음 총회에 협상을 이어갈 것을 제안.

- (주요 결정사항) DSI의 기술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다년간 계획에 포함하기로 결정

-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 향후 DSI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가 계속될 전망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전문가 워크숍, 정책연구 등 추진할 계획

○ 의제 17.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11.15.)

- (사무국 보고) 2020-2021 2년(Biennium)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초안은 최근 작업 프로그램과 예산 실행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하며, 국제조약의 최신 정책과 운영 상황을 설명

- (주요국가 발언) 일본, 스위스 등은 조약 예산 증액안(13%)이 과도하고 예산 보고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 예산 증액안 삭감을 요구

- (주요 결정사항) 향후 2년간 예산안을 지난 2년의 수준으로 동결

○ 의제 18. 조약 기구 사무국장의 선임 (11.15.)

- (사무국 보고) 마리아 헬레나 세메도(FAO 부국장) 및 FAO 법률단(FAO Legal Officer)은 현 사무국장을 1년 재임명 할 것을 제안함.

- (주요국가 발언) FAO의 지역 대표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의 연속성을 요구하며 현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 연장 할 것을 요구함. 크리스틴 도슨(FAO 의장)은 켄트 나도지에 사무국장의 2년 임기 갱신을 지지함. 마리아 헬레나 세메도(FAO 부국장)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추가로 1년 더 갱신 할 수 있도록 제안함.

  유럽은 조약과 FAO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데 동의함. 카메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함. ① FAO 기술 요구사항(FAO technical requirements)에 따라 공석

초안마련 ② 선발위원회(The selection committee)는 3명의 FAO, 조약 대표 4명(개도국 2명, 선진국 2명)로 구성함 ③ 초기 후보자는 7-10명을 선발 ④ 5명의 최종 후보자는 인터뷰에 의해 결정 ⑤ FAO 사무총장은 한명의 후보자를 임명함.

- (주요 결정사항) 현 사무국장의 임기를 1+1년 연장하기로 결정, 사무국장 선임 절차에 대해 FAO와 조약 의장단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 의제 19. 조약 의장 및 대륙별 부의장 선임 (11.15.)

- 제9차 총회 의장은 모로코(아프리카)의 Ms. Yasmina El Bahloul 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인도(아시아), 아르헨티나(중남미), 예멘(근동), 미국(북미), 호주(대양주) 대표로 구성됨. 간사(Rapporteur)는 쿠웨이트의 Ms. Fadilah Al Salemeen이 선출됨

○ 의제 20. 제9차 총회 일정 및 장소 (11.15.)

- 제9차 총회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20.11, 잠정)

□ 사이드 이벤트 참석 및 업무협의 결과보고 (13:00~15:00)

○ 조약 체제 하에서의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운영(11.11)

- Crop Trust와 CGIAR 간 파트너십 사업인 '종자은행 플랫폼(Genebank Platform)'은 CGIAR 산하 11개 종자은행에 75만 여점의 식물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6만 여점의 유전자원을 세계 각지에 분양하고 있음. 그 외 난저장 종자 및 영양체 자원의 초저온보존, 유전자원 건전성(germplasm health)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조약을 이행하고 있음.

○ DSI, 지재권 및 식물유전자원조약(11.12)

- 미국은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 서열에 대해 특허를 낼 수 없으나 유럽 및 다수의 개도국에선 분리 동정된(isolated) 유전자 서열에 대한 특허 가능
  → 특허가 설정된 유전자가 포함된 품종의 이용은 특허권자 허락 필요

- 미국의 경우도 원래의 서열에서 상당한 변형을 한 경우(gene construct 등) 유전자 서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 가능

- 합성유전학에 대한 특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특히 Crisper 등 유전체 편집 기술 관련) 실물 유전자원의 접근 없이 공개된 DB의 유전자 서열 정보만을

이용해 작물을 개량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

○ 국제정보시스템(GLIS)과 디지털객체식별자(DOIs)(11.12.)

- 2018-2019년 동안 Genesys는 GLIS에 2백만5천여 건의 데이터가 연계되었으며 60만건의 DOI가 등록됨. EURISCO는 8천여 건의 DOI를 등록하였고 미국의 GRIN-Global는 연계를 위한 테스트 단계에 있음. WIEWS는 2020년 시스템 간 연계를 진행할 예정임.
-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SAC) GLIS 가이드라인 및 설명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향후 보완할 부분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NCBI, Divseek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연계를 촉구함.
- GLIS포탈의 구조, 연계에 사용되는 툴(tool), 데이터구조 등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

○ 다양성 분석기술을 통한 세계 작물다양성 우선순위 결정(11.13)

- Crop Trust는 2020년까지 CGIAR 산하 종자은행에 보존하고 있는 바나나, 벼, 밀, 콩, 밤바라 땅콩, 땅콩, 보리, 완두, 풀완두, 옥수수, 수수, 잠두, 동부, 병아리콩, 토란, 감자, 고구마 등 22개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수집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식물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기타 업무협의) 종자은행 플랫폼과 농촌진흥청 간 국제협력 추진방안(11.15)

- Crop Trust 총재 마리 하가, 과학 분야 과장 루이지 구아리노, 종자은행 플랫폼 코디네이터 샬롯테 러스티와 함께 농촌진흥청과 종자은행 플랫폼 간 국제협력 추진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주요 협력분야로 농업유전자원 교환,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시스템 향상, 유전자원 건전성·초저온보존·다양성분석 등에 대한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을 논의하였음. Crop Trust 총재는 종자은행 플랫폼과 농촌진흥청 간 MOU 체결을 제안하였음.

□ 아시아 지역회의 결과보고 (11.11.~11.16, 09:00~10:00)

※ (참가국) 일본(의장), 한국, 인도네시아, 부탄, 라오스, 태국,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등 10개국 약 40명

<11.12.(화) 09:00~10:00>

○ 다자체제 기능개선 및 조약개정(의제 8) 향후 논의 방향 협의

- 작업반에서 DSI의 이익공유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간 첨예한 논쟁이 있어 결국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문서를 상정하지 못하여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아시아지역 대표 의견 마련

· DSI에 대한 정의, 이익공유 방법, 현재의 DSI 이용 현황, 조약개정전과 후의 비교 등을 포함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제안

· 이번회의에서 open-ended 작업반을 구성하여 차기 회의때까지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대표 발언문 검토

- (기금전략) 정기이용권 및 개별 자원접근을 통한 이익공유액 추산 등 총예산 산출방법의 명확화 요구
- (정보시스템, GLIS) 다른 국제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세계작물다양성재단에서 운영하는 GENESYS, CGRFA의 WIEW, 미국 GRIN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간 협력 중요함을 강조하고 GLIS를 통한 국가간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소요 예산을 요청할 것을 요구함

<11.13.(수) 09:00~10:00>

○ 이행준수위원회 아시아지역 대표 최종 추천 : 라오스

- 라오스와 한국이 추천되었으나 한국 전문가가 결정되지 않아(어제 오후 8시까지로 전문가 추천 마감) 결국 라오스가 추천됨

○ 조약개정 및 다자체제 기능향상 논의 방법 논의

- 인도에서 DSI의 이익공유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첨예하여 지역간, 국가간 상관없이 과학기술 차원에서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진 전문가 위주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법 제안

○ 본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대표 발언문 검토

- (GB-8/19/18.1;사무국선출,) 조약 제20조에 근거하여 선출하고, ITPGRFA운영기구의 승인이 필요함을 건의함

- (GB-8/19/15;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식물조약의 CGIAR의 협력과 지원을 강조

<11.14.(목) 09:00~10:00>

○ 다자체제 기능개선과 조약개정안 소그룹회의(11.13. 19:30~22:30) 결과 공유

- 소그룹회의에 각 지역별 2개국의 발언국가와 2개국의 옵저버로 참석하도록 사무국에서 요청하여 대표로 일본과 인도가 참석하였고, 옵저버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참석

  * 한국이 옵저버로 참석하길 요청하였으나 아시아국가의 개도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시아를 대표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첫 회의에 는 참석할 수 없었으나, 다음 회의부터는 옵저버를 돌아가면서 참석하기로 합의하여 2차 소그룹회의(11.14.)에는 참석하기로 하였음

- 스위스와 짐바브웨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절충안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국가별 이견을 나누는 정도였음

  * 절충안 : ① DSI 쟁점 협의 후 SMTA개정 필요, ②DSI 내용이 작업반 6월 상정문 6.7, 6.8, 6.9(개별 유전자원 접근 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related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제품을 상품화할 경우 일정 비율의 이익을 공유해야함) 에 포함 ③ DSI 쟁점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CBD, CGRFA의 진행상황과 맞추어 다년간 계획(MYPoW)에 포함할 것

<11.15.(금) 09:00~10:00>

○ 회의 진행상황 공유

- (의제)다자체제기능향상과 조약개정(의제8)과 기금전략(의제9)은 논의 진행중이나, 정보시스템(GLIS), 유전자원 지속적 활용(의제11), 이행준수(의제13), 타 국제기관과의 협력(의제14와 15)은 논의가 끝나 결정문 초안이 나올 예정

- (소그룹회의) 14일(목) 20:00~23:00에 소집되었던 조약개정 소그룹회의에서 SMTA 개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전체 절충안만 작성되어 대부분 국가가 SATA 개정안이 우선 작성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합의한 내용은 없고 조약 적용 작물확대와 같은 기본 부분을 반대하는 국가(에쿠아도르) 발언 등 국가간 의견을 공유했음

○ 논의 의제 검토 : 기금전략(의제9)

- 아시아 국가 96%가 기금을 내고 있어 조약 기금 기여가 높은 편이고, 기금을 전혀 내지 않은 국가가 30% 정도임을 일본의장이 설명

- 국가별로 기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국가보고서에 기금 기여 상황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를 포함할 것을 제안할 것을 요청

○ 기타

- 핵심쟁점에 대해 소그룹회의 보다 본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견을 좀 더 투명하게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

- 이번 DSI쟁점 결정안은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부분 국가별 주관 부처가 식물조약은 농림부, 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부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소통과 협력 필요

- 인도가 차기 회의 개최국을 희망하여 본회의에서 먼저 발언하고 아시아대표로 일본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함

<11.15.(금) 09:00~10:00>

○ 다자체제 기능향상과 SMTA 개정(의제8) 쟁점 진전 여부 의견 교환

- 이번회의에서 소그룹회의 등을 통해 국가간 이견이 첨예하여 이 쟁점에 대해서 차기 회의로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무효로 할 것인지 국가별 의견 교환

- 말레이시아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DSI 정의, 이익공유액, 작물확대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정교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에 법률적 부분을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고, 몽고와 필리핀은 유전자원 접근과 분양 현장에서 실제 적용부분까지의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우리나라는 지난 소그룹 회의에서 쟁점 자체를 무효화 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을 설명하고, CBD, CGRFA 등 관련된 국제조약 등과 협력하여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언급함

○ 논의 의제 검토 : 기금전략(의제9)

- 일본은 기금 사용계획과 이용결과에 대해 요소별로 투명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조약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재정보고서 및 관련 문서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언급함. 이에 대해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동의함.

III 시사점

○ DSI 이슈에 대한 집중적 분석, 연구를 통한 국제논의 대응 필요

– 본 협상은 결렬되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해 DSI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관련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개도국의 조직적 대응 예상

○ 전문가 풀 및 인력 확충, 담당자 역량강화,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 강화 필요

–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는 기술·법률·국제협상이 결부된 이슈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주요 선진국은 외교·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대표단 구성

– 일본은 본 조약을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주요 선진국은 외교·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대표단 구성

– 우리나라도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워크숍, 자료 제작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국내외 전문가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필요

IV 증빙자료

❑ 출장증빙확인서

1. 항공권 영수증



지불영수증 Payment Receipt

항공권 결제 방식 카드

카드종류/CARD TYPE CA	카드번호/CARD NUMBER XXXXXXXXXXXX3549
유효기간/EXPIRY DATE XXXX	거래일자/TRANSACTION DATE 22OCT19
할부기간/EXTENDED TERM 00	승인번호/APPROVAL NUMBER 68484534
결제금액/AMOUNT KRW 1,650,800	항공권번호/TICKET NUMBER 1809595552781
항공사/AIRLINE KE(KOREAN AIR)	예약번호/RESERVATION NUMBER 4277-8751

취급수수료(TASF) 결제 방식 카드

카드종류/CARD TYPE CA	카드번호/CARD NUMBER XXXXXXXXXXXX3549
유효기간/EXPIRY DATE 1221	거래일자/TRANSACTION DATE 22OCT19
할부기간/EXTENDED TERM 00	승인번호/APPROVAL NUMBER 68487481
결제금액/AMOUNT KRW 110,000 공급가액 100,000 VAT 10,000	취급수수료번호/TASF NUMBER 9540026841411

여정/ITINERARY
ICN-FCO-ICN

승객명/PASSENGER NAME
LEE/KANGOH MR

총 결제 금액/TOTAL AMOUNT KRW 1,760,800	여행사/PLACE OF ISSUE 나래탈투어 / 17323213

이 영수증은 국세청 증빙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ticket>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Provided by TOPAS

나래탑투어
성경숙 (Tel 02-863-8787 , Fax 05043258152)
topji9ap@naver.com

1726 / 22OCT19

신세계면세점 스마트선불 1만원 증정

승객성명	Passenger Name	LEE/KANGOH MR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4277-8751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1809595552781

중앙정보 오프라인 각점 고객센터
• 타인이 상 결제 시 사용가능, 적립가능불수
• 합산사용 안됨, 일부 브랜드 제외
• 기타 유래사항 우측 QR코드이용 객사등 참조

여정 Itinerary

편명 Flight **KE0931** (예약번호:**TNE39Y**) Operated by **KE(KOREAN AIR)**
*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출발 Departure	서울(ICN/Incheon intl)	10NOV19(일)	15:10	Local Time	Terminal No. : 2
도착 Arrival	로마(FCO/Leonardo da vinci)	10NOV19(일)	19:35	Local Time	Terminal No. : 3

예상비행시간	Flight Time	12H 25M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579
예약등급	Class	E (일반석)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좌석 타입	Seat Type	-		Not Valid After	10NOV20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수하물	Baggage	1PC
운임	Fare Basis	ELW0ZRMK	좌석번호	Seat No.	39C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편명 Flight **KE0932** (예약번호:**TNE39Y**) Operated by **KE(KOREAN AIR)**

출발 Departure	로마(FCO/Leonardo da vinci)	18NOV19(월)	22:00	Local Time	Terminal No. : 3
도착 Arrival	서울(ICN/Incheon intl)	19NOV19(화)	17:00	Local Time	Terminal No. : 2

예상비행시간	Flight Time	11H 00M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579
예약등급	Class	E (일반석)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좌석 타입	Seat Type	-		Not Valid After	10NOV20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수하물	Baggage	1PC
운임	Fare Basis	ELW0ZRMK	좌석번호	Seat No.	36D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항공기 기종은 사전고지 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연결항공권	Conj.Ticket No.	-
운임산출내역	Fare Calculation	SEL KE ROM624.10KE SEL624.10NUC1248.20END ROE1201.730079
산출운임	Fare Amount	KRW 1500000(Paid Amount KRW 1500000)
지불화폐	Equiv. Fare Paid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Taxes/Carrier-imposed Fees	Paid Amount KRW 150800
* 세금	Taxes	KRW 28000BP 3300EX 9900HB 36400IT 1300MJ 4300VT
		* 한국 출발 세금(BP)에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인천/김포 공항 17,000 원, 기타 12,000원), 출국납부금 10,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KRW 67600YR
부가수수료	Service Fees	0
총신용금액	Total Amount	KRW 1650800 (Total Paid Amount KRW 1650800)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CCCA XXXXXXXXXXXX3549 / XXXX/00
발행일 발행처	e-Ticket Issue Date/Place	22OCT2019 / 17323213 / SELK131BA

취급수수료(TASF) KRW 110000(CC **XXXXXXXXXXX3549/****/00)

*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법적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입출국/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보험 영수증(법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종류 농협(구축앱)	카드번호 553171******3549
유효기간 ****년 **월	카드주명
거래일시(취소일시) 2019/10/22 15:45	카드유형 승인
할부 일시불	승인번호 68584951

가맹점명 에이스에비리지희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지점 처브그룹 프랜니	금액	₩ 20,900
가맹점번호 1426********	대표자명 에드워드 러	
사업자등록번호 116-84-00907	업태 보험업	
종목 손해보험	승인관련문의 1566-5800	
가맹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우편번호 03142)		

<보장세부내역>

CHUBB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고객센터 1566 5800
주식회사한국지점 www.chubb.com/kr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가입증명서

기본사항

상품명	Chubb 해외여행보험	증권번호	P19C00038505881
보험기간	2019년 11월 10일 06시부터 2019년 11월 20일 06시까지	가입일시	2019년 10월 22일
계약자	최이랑	주민등록번호	101-81-*****
여행지	이더리	여행목적	연수/교육/출장
여행구분	1명	보험지역	국내
		보험료	20,900 원

피보험자

이강오	1969년 03월 28일	남	기타	법정상속인		TOP_02	20,900원

보험가입사항

구분	보장내용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해외의료비(상해_해외여행실손_기존_S)	2,000만원
	국내의료비(상해입원_해외여행실손_기존_선택형_2_S)	2,000만원
	국내의료비(상해통원외래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25만원
	국내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5만원
	해외의료비(질병_해외여행실손_기본_S)	2,000만원
	국내의료비(질병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2,000만원
	국내의료비(질병통원외래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25만원
	국내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5만원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350만원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MRI/MRA)	300만원
TOP_02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2,000만원
	해외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1,000만원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70만원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00만원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140만원
	신용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1,000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추 재발급비용	6만 7,000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50만원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20만원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2만원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3만원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3만원

유의할 사항

- 본 가입증명서는 전산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타자나 수기로 작성된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서 조회 및 발급한 내용과
- 보험 계약 시 건강상태, 위험한 활동유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담당자

소속	트라블가디언(보험마리점)	연락처	02-733-6127
성명	서성귀	팩스	-

Chubb Assistance 긴급 지원 서비스센터

여행 중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24시간 세계 어느 곳에서나 82-2-3449-3500 을 사용하십시오. 한국어로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지역
Chubb Insurance
Accident & Health International Claims
PO Box 5124
Scranton, PA 18505-0556, USA
Tel: + 1-800-262-8028 (toll free 08:00-16:30 Eastern time)
Fax + 1 802-476-7857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지점, 처브그룹 컴퍼니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대표 에드워드 (Edward Ler)

❑ 항공 마일리지 현황

성 명	발생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
이강오	11,158마일(11,158마일)